

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7 조 (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 및 상환일)

- ① 법 제 6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은 실제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, 상환일은 그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매출일 해당일로 한다.
- ② 주택은행은 제 1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채권의 실제매출일로 부터 매출일까지의 이자를 선급할 수 있다.

제 8 조 제 7 호중 “발행일”을 “매출일 및 실제 매출일”로 한다.

제 23 조 (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기준)중 “그 종류와”를 “그 종류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 25 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는 연 6 분으로 한다.

별표 1 의 본문 3 의 나중 “기한부”와 “(5)”를 각각 삭제하고 3 의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동일인이 1년 이내에 동일사업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면허 또는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, 동일인이 1년 이내에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매입액의 국민주택채권을 첨가 매입하게 한다. 다만 낮은 기준매입액을 먼저 첨가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

기준매입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첨가 매입하게 한다.

별표 1 의 별지 부표중 8 항의 첨가 매입대상 및 첨가매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첨가매입대상	(단위: 원) 첨가매입금액
8. 건축허가	
가. 주택전용	
연면적(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연면적 165㎡ 이상) (증축을 포함한다)	
1)철근 및 철골조.....	3.3㎡ 당 10,000
2)연와조 및 석조.....	3.3㎡ 당 3,000
3)시멘트 벽돌 및 부력조.....	3.3㎡ 당 2,000
나. 주택전용 이외의 건축물	
(다만, 공장의 경우에는 인구 50만인 이상의 지역에 한하며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교육용, 종교용,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축산업등에 직접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)	
연면적 165㎡ 이상(증축을 포함한다.)	
1)철근 및 철골조.....	3.3㎡ 당 3,000
2)연와조 및 석조.....	3.3㎡ 당 2,000
3)시멘트벽돌 및 부력조.....	3.3㎡ 당 1,000
다. 관광사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호텔.	연면적에 대하여 3.3㎡ 당 .1,500(증축을 포함한다).

부칙

- ① (시행일)이 영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 7 조의 규정을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